

쾌적한 환경, 간판이 만듭니다

<http://www.ooh.or.k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2013.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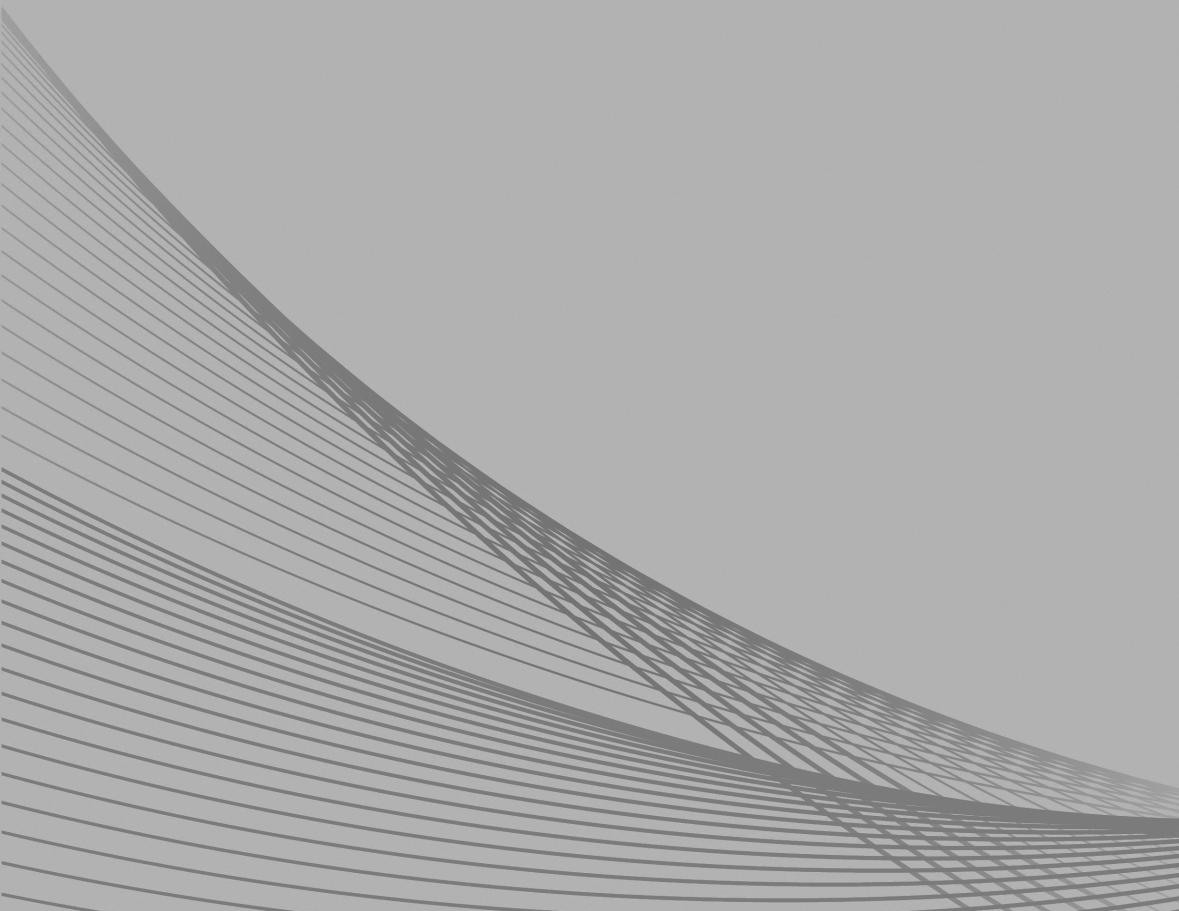
목 차 I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1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및 서식	80

목 차 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3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 3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3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4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4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6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5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8
	제6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9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10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11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11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13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13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14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5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28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5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32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7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33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1
제5조(금지광고물등) 34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3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34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4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4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6
	제21조(표시방법의 원화) 26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27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28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28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31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32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33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3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36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6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40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38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40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39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42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0
제8조(적용 배제) 43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42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4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42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46	제35조(수당과 여비) 43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47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44
제10조의3(이행강제금) 49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45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50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46
제11조의2(결격사유) 51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46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52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47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53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48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55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49
제13조(허가 취소 등) 55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49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56	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50
제15조(청문) 57	제45조(변경등록) 51
제16조(광고물 설명제) 57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51
제17조(수수료) 57	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52
제18조(별칙) 57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52
제19조(양벌규정) 58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55
제20조(과태료) 59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55
부칙 60	제51조(행정처분기준) 55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56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 56
	제54조(규제의 재검토) 58
	제55조(과태료의 부과) 59
	부칙 60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11.3.29]</p>	<p>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 <p>[전문개정 2011.10.10]</p>
<p>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의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3.29] [제21조에서 이동 <2011.3.29>]</p>	<p>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3 ●</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p>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p>	<p>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세로형 간판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둑어 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자주(支柱)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자주에 붙이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광자·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p> <p>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 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p> <p>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p> <p>7.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p> <p>8.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p> <p>9.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p> <p>10.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p> <p>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p> <p>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모자·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p> <p>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p> <p>14.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p> <p>15.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p> <p>16.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 등에 문</p>
<p>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p> <p>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 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전문개정 2011.3.29]</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p> <p>[전문개정 2011.10.10]</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허가 및 신고</p> <p>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시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판”이라 한다)</p> <p>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p> <p>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p> <p>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p> <p>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p> <p>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p> <p>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p> <p>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p> <p>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p> <p>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p> <p>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p> <p>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p> <p>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광고물</p> <p>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p> <p>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p>[전문개정 2011.10.10]</p> <p>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p> <p>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자주 이용 간판</p> <p>6. 현수막</p> <p>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8. 벽보</p> <p>9. 전단</p> <p>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6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자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p> <p>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p> <p>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전문개정 2011.10.10]</p> <p>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기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같음할 수 있다.</p> <p>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p>[전문개정 2011.10.10]</p>
	<p>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기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기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p>[전문개정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p>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1.10.10]</p> <p>[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0.10>]</p> <p>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시장등”은 “시·도지사”로,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로 본다. <small>[전문개정 2011.10.10]</small></p> <p>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p> <p>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p> <p>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p> <p>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p> <p>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전문개정 2011.10.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0.10>]</p> <p>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13.6.21>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p>[전문개정 2011.10.1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10.10>]</p> <p>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p> <p>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 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p> <p>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p> <p>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p> <p>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래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p>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10.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10.10>]</p> <p>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 미널의 건물</p> <p>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p> <p>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p> <p>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p> <p>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p> <p>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총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p> <p>가. 특별시의 경우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p> <p>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p> <p>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p> <p>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p> <p>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p> <p>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p> <p>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p> <p>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 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p> <p>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뛰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p>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총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p> <p>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p> <p>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p> <p>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p> <p>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p> <p>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p> <p>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p> <p>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p> <p>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p> <p>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2011.10.10)]</p> <p>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p> <p>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p>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p> <p>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 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전문개정 2011.10.10] [제20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별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의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의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표시하여야 한다.</p> <p>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p> <p>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1.10.10>]</p>
	<p>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빙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 [제27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p> <p>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출수선 및 흘수의 차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10.10>]</p> <p>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10>]</p>
	<p>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10.10></p> <p>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 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p>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p>[전문개정 2011.10.10] [제32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자구만 해당한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p>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0] [제32조의2에서 이동 <2011.10.10>]</p> <p>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p>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p> <p>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10.10></p>
<p>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p>	<p>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들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p> <p>③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small>[전문개정 2011.3.29]</small></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p> <p>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p> <p>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p> <p>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p> <p>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p> <p>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 및 자연유보지역</p> <p>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p> <p>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p> <p>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p> <p>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타. 다리·죽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索道)</p> <p>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p> <p>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p> <p>나. 전봇대</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가로수</p> <p>마. 동상 및 기념비</p> <p>바.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p> <p>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p> <p>아. 전망대 및 전망탑</p> <p>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p> <p>차. 재배 중인 농작물</p> <p>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p> <p>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지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전문개정 2011.10.10] [제10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한 구역 <p>②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 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 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 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 역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p>[전문개정 2011.10.10] [제12조에서 이동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안전행정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29]</p>	<p>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p> <p>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5.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6.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	<p>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 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p> <p>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2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10>]</p> <p>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고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7.9]</p> <p>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3.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p>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10.10]</p>
<p>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p>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친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p>[전문개정 2011.3.29]</p>	<p>[종전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10.10>]</p>
<p>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p>	<p>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p> <p>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 한다)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p>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 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청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3.29]</p>	<p>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자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자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여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 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p>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삭제 <2011.10.10>]</p> <p>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p> <p>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할 수 있다.</p> <p>2.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 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p> <p>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0]</p> <p>[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삭제 <2011.10.10>]</p> <p>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p> <p>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개정 2013.6.21></p> <p>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이를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p>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p>	<p>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p> <p>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0.10>]</p>
<p>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광고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p>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p> <p>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p> <p>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 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심의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행 	<p>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0.10>]</p> <p>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p>[전문개정 2011.10.1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10.10>]</p> <p>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자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21>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정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후선(互選)한다.</p> <p>〈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전문개정 2011.3.29〕</p>	<p>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10.10〉〕</p>
<p>제8조(작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훈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 	<p>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하는 경우</p> <p>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1.3.29]</p> <p>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9장 안전점검 <신설 2011.10.10></p> <p>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 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10.1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11.10.10>]</p> <p>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p>④ 시장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1.10.10>]</p> <p>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10.10>]</p>	<p>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p> <p>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10.10]</p> <p>[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p> <p>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p> <p>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 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p> <p>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 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p>[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p> <p>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도에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p>
	<p>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p>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10.10>]</p> <p>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 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p> <p>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p>	<p>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10.10>]</p> <p>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군·구에 귀속된다.</p> <p>[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9조로 이동 <2011.10.10>]</p> <p>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시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3.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3.29>]</p>	
<p>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p>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p>	<p>제11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 등 <small>〈신설 2011.10.10〉</small></p> <p>제44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p> <p>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p>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p>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52조로 이동 <2011.10.10>]</p>
<p>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11.3.29]</p>	<p>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p> <p>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10.10]</p> <p>[종전 제45조는 제53조로 이동 <2011.10.10>]</p> <p>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분조신설 2011.10.10] [종전 제46조는 제55조로 이동 <2011.10.10>]</p> <p>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p>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p> <p>[분조신설 2011.10.10] [종전 제47조는 제43조로 이동 <2011.10.10>]</p>
<p>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p>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 	<p>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상실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종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p> <p>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p>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 	<p>12. 해산에 관한 사항</p> <p>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0] [제41조의2에서 이동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한 사업</p> <p>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사업</p> <p>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p> <p>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p> <p>9.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지원</p> <p>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p> <p>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p> <p>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p> <p>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i>〈개정 2013.3.23〉</i></p> <p>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개정 2013.3.23〉</i></p> <p>⑩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i>〈개정 2013.3.23〉</i></p> <p>[전문개정 2011.3.29]</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옥외광고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2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p>	<p>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3조에서 이동 <2011.10.10>]</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금지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p>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p>[전문개정 2011.3.29]</p>	
<p>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p>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4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업자가 다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p> <p>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3.29]</p>	<p>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p>[전문개정 2011.3.29]</p>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5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p>[전문개정 2011.3.29]</p>	
<p>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 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p>[전문개정 2011.3.29]</p>	
<p>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1.10.10〉</p> <p>제54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7.9]</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p>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3.29]</p>	<p>제13장 과태료 〈신설 2011.10.10〉</p> <p>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10.10]</p> <p>[제46조에서 이동 〈2011.10.10〉]</p>
<p>제20조의2</p> <p>[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p>	
<p>제21조</p> <p>[종전 제2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3.29〉]</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p> <p>부칙 〈제4242호, 1990.8.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시되거나 설치된 광고물등은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옥외광고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p> <p>부칙 〈제13242호, 1991.1.8〉</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간신허기를 할 수 있다.</p> <p>부칙 〈제13517호, 1991.12.1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655호, 1992.5.30〉 (건축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516호, 1992.12.8〉</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본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부칙 〈제13856호, 1993.2.24〉</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p>
<p>• 6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14486호, 1994.12.3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호법시행령등증개 정령)</p> <p>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15271호, 1997.2.6〉</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 증이 교부된 광고물들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 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p>
	<p>부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p> <p>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5632호, 1999.1.18〉</p>	<p>부칙 〈제15639호, 1998.2.19〉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부칙 〈제16112호, 1999.2.8〉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로 본다.</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부칙 〈제16125호, 1999.2.26〉</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이를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들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들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부칙 〈제16850호, 2000.6.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부칙 〈제6490호, 2001.7.24〉</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광고물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허기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6891호, 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p> <p>부칙 〈제17412호, 2001.11.22〉</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p> <p>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제5조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례 또는 시·군·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부칙 〈제17616호, 2002.5.27〉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내지 〈74〉생략	부칙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부칙 〈제6898호, 2003.5.29〉</p> <p>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7246호, 2004.12.23〉</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p> <p>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p> <p>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p> <p>〈43〉내지 〈73〉생략</p> <p>제17조 생략</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③(결격사유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그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p>부칙 〈제18868호, 2005.6.23〉</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p> <p>③(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군·구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한 사항은 각각 당해 시·군·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p>
	<p>부칙 〈제18903호, 2005.6.30〉</p> <p>(디자인보호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⑯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p> <p>〈16〉내지 〈20〉생략</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부칙 〈제19073호, 2005.9.30〉 (자연공원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p> <p>부칙 〈제19407호, 2006.3.23〉</p> <p>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9493호, 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부칙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8호, 2006.6.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로 한다. 〈21〉내지 〈3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로 한다. 〈21〉내지 〈35〉생략
부칙 〈제8737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부칙 〈제20120호, 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행하며,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2조 (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3조 (옥외광고업자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부비치 및 등록번호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4조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5조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p>	<p>부칙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부터 〈70〉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0911호, 2008.7.9〉
부칙 〈제9201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19〉부터 〈38〉 까지 생략</p>	<p>부칙 〈제21590호, 2009.6.30〉(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9636호, 2009.4.22〉 (궤도운송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부터 ⑪ 까지 생략</p>	<p>제2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 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제8조 생략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기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지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8조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p> <p>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p> <p>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1807호, 2009.11.2〉 (궤도운송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 까지 생략 ⑯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삭도”를 “궤도”로 한다. 〈16〉부터 〈25〉 까지 생략</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2073호, 2010.3.9〉 (산림보호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⑬ 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칙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항 본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9〉 부터 〈192〉 까지 생략</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부칙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626호, 2011.1.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들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광고물등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들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 <제22836호, 2011.4.4></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2 및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3113호, 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p> <p>부칙 <제23215호, 2011.10.10></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 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의</p>
<p>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p>	
<p>제5조 (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6조 (광고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고사업협회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로 본다.</p>	
<p>제7조 (광고물 실명제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small>[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small>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small>[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small>
<p>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군·자치구 조례를 적용한다.</p>	<p>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p>
<p>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 (시·도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시·도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지정 및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사항은 각각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시·군·구 조례 또는 시장등이 정하거나 고시한 바에 따른다.</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해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p>
	<p>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23939호, 2012.7.9〉</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p>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 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4〉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제2조 (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부터 〈129〉까지 생략</p> <p>부칙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6.2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및 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별표 1] <개정 2011.10.10>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가로형 간판	3년 이내
2. 세로형 간판	3년 이내
3. 돌출간판	3년 이내
4. 공연간판	2년 이내
5. 옥상간판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8.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9. 벽보	15일 이내
10. 전단	15일 이내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 제2조 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3년 이내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30일 이내
14. 선전탑	30일 이내
15.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주요 국제행사 및 수익금 배분비율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1. 주요 국제행사

- 가. 2013 총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

- 가. 2013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2013 총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각 조직위원회에 수익금의 100분의 65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한다.
- 나. 2013년 10월부터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각 조직위원회에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하고 남는 금액은 광고물등을 설치한 시·군·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그 밖의 시·도 및 시·군·구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각종 사업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 라. 가목 및 나목의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 마. 배분금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종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1. 지 주 이용간판	<p>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8m(총 광고면적은 288m²) 이내로 하되, 입체형·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p> <p>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게시시설의 높이를 포함하여 도로면 수평높이로부터 25m 이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p> <p>3.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평면형 : 광고판의 한 면 이상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p> <p>나. 입체형 :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입체적·조형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p> <p>다. 복합형 : 평면형과 입체형을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p> <p>4.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 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조형적 형태의 게시设施을 설치할 수 있다.</p> <p>5.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해야 한다.</p>	<p>1.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구로부터 30m 밖의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p> <p>가. 도로·제방·하천 등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p> <p>나. 자동차 등의 운전 시계(視界)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2.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500m 이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p> <p>3.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p> <p>가. 홍수시 유수(流水)의 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 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p> <p>나. 제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p>

종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2. 홍보 탑	<p>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0m, 세로 5m(총 광고면적은 100m²)이내이어야 하고,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0m 이내로 하되, 입체형·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p> <p>2.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서만 광고물 면적이 12m² 이내, 광고물등의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m 이내인 전광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p> <p>3.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호 지주 이용 간판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공항·철도역사·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입로 및 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p> <p>2.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p> <p>3. 적색·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상은 사용할 수 없다.</p> <p>4. 광고물등 간의 이격거리는 두지 않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 경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p>
3. 옥상 간판	표시규격은 제15조제6호를 준용한다.	<p>1.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 총수는 제15조제3호를 준용한다.</p> <p>2.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기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호에 따른 광고물 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때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p> <p>3.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만 설치해야 한다.</p>

비고

-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전광류 광고물들은 제외한다.
-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
 - 니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 구간)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지지역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물의 높이는 설치지점으로부터 산정한다.

[별표 4] <개정 2011.10.10>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사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

-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면적 $2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만원+면적 $20m^2$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연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연면적 $2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만원+연면적 $20m^2$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자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연면적 $3m^2$ 이상 $5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연면적 $1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만원+연면적 $10m^2$ 초과하는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연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연면적 $20m^2$ 이상 $50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 연면적 $5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만원+연면적 $50m^2$ 초과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띠우는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이 인정한 편의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 비행선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연면적 $3m^2$ 이상 $5m^2$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연면적 $5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만원+연면적 $5m^2$ 초과 면적의 $1m^2$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접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개정 2011.10.10>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기술능력	시 설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비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별표 7]〈개정 2012.7.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2호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4조 제3호	영업정지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4호	등록취소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m^2$ 미만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나) 연면적 $1m^2$ 이상 $2m^2$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다) 연면적 $2m^2$ 이상 $3m^2$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라) 연면적 $3m^2$ 이상		130만원+연면적 $3m^2$ 초과하는 면적의 $0.5m^2$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m^2$ 미만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나) 연면적 $1m^2$ 이상 $2m^2$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연면적 $2m^2$ 이상 $3m^2$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라) 연면적 $3m^2$ 이상		80만원+연면적 $3m^2$ 초과하는 면적의 $0.5m^2$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m^2$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나) 면적 $3m^2$ 이상 $5m^2$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다) 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라) 면적 $10m^2$ 이상		80만원+면적 $10m^2$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m^2$ 미만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나) 면적 $3m^2$ 이상 $5m^2$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다) 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라) 면적 $10m^2$ 이상		80만원+면적 $10m^2$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과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 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하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신청(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 (인)	주소	전화번호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주소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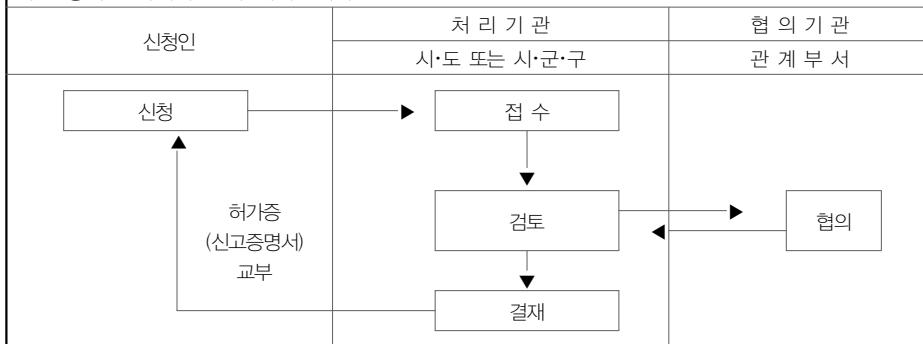
첨부서류	<p>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면,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p> <p>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면,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p> <p>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p> <p>4.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p> <p>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p> <p>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p>	<p>수수료</p> <p>※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p> <p>※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수료도 별도 징수합니다.</p>

작성방법

-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시공업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허가조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0.10>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수량 규격	사용자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 (변경 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 관리자 (변경 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유	변경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9>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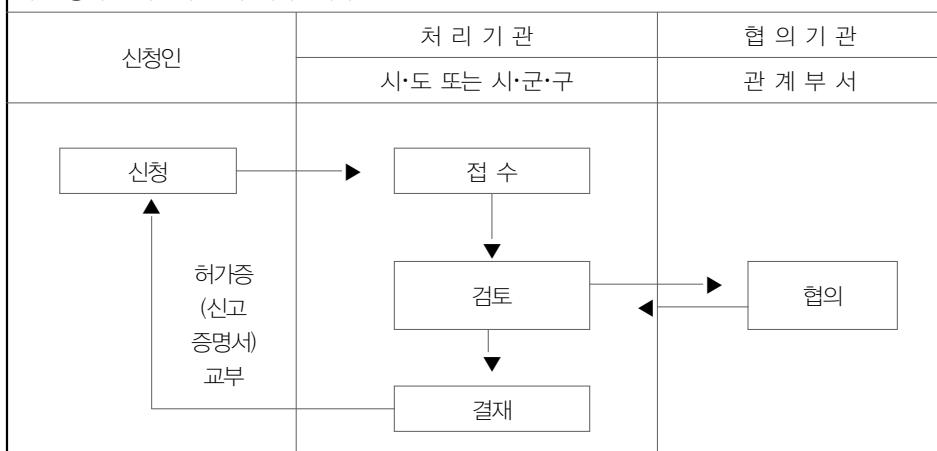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신고)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표시기간	당초		
	연장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 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 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수수료 ※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유의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 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처리과정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사용자자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 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신고번호	
	주소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수수료 ※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사용자자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대표자	신고번호	
	업소명	주소	
검사자	성명	검사일	
	소속	주소	
검사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21>

**옥외광고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신고인)	성명 업소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또는 작업장)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대표자 []업소(법인)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폐업·재개업 기재부분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업 등록증 3. 휴업·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 시·군·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0.10>

제 호

옥외광고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업소명

5.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작업장)

6. 영업내용

7.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2.7.9>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